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박수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26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5.

발 의 자 : 박수영 · 서천호 · 이성권
김재섭 · 이인선 · 권영세
박충권 · 곽규택 · 박성훈
김 건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3조의3의 신설로 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해산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해산 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었음.

출연자가 해당 특례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, 당초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 또는 그 대체취득재산을 회수하는 경우에도 세 부담이 발생하고, 이에 따라 원활한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.

이에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해당 법인의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 중 출연재산 및 그 대체취득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되, 거짓이나 그

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2조의5 신설).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5(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해산에 대한 감면) ①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3조의3에 따라 해산된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해당 법인의 설립 또는 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출연한 자(이하 이 조에서 “설립자등”이라 한다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.

1. 설립자등이 해당 법인에 출연한 토지 및 건축물
2. 설립자등이 해당 법인에 출연한 금전 등의 재산으로 해당 법인이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
3. 제1호 또는 제2호의 재산을 바탕으로 해당 법인이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

② 설립자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제대상 부동산의 확인, 취득세 면제의 신청 및 추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

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취득세 면제에 관한 유효기간 및 적용례) ① 제22조의5의 개정 규정은 2033년 5월 1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②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3조의3의 유효기간 중 해산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해산 인가를 받은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22조의5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22조의5(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해산에 대한 감면) ①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3조의3에 따라 해산된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해당 법인의 설립 또는 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출연한 자(이하 이 조에서 “설립자등”이라 한다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설립자등이 해당 법인에 출연한 토지 및 건축물</u> <u>2. 설립자등이 해당 법인에 출연한 금전 등의 재산으로 해당 법인이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</u> <u>3. 제1호 또는 제2호의 재산을 바탕으로 해당 법인이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</u> <p><u>② 설립자등이 거짓이나 그 밖</u></p>

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제대상 부동산의 확인, 취득세 면제의 신청 및 추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